

『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6월 13일

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근로자 문화·복지시설 확충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실현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위탁재산현황

- 건 물 명 :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
- 위 치 : 구미시 구포동 1023번지
- 규 모 : 부지 15,503.5㎡, 연면적 5,995.44㎡(지하 2층, 지상 3층)
- 건 립 비 : 180억원(국비76, 도비15, 시비89)
- 주요시설 : 수영장(1), 헬스장(1), 에어로빅장(1), 대강당(1), 시청각실(1), 도서실(1), 야외무대(1), 취미교육실(4), 컴퓨터실(1), 어학실(1) 등

라. 운영보조금 : 연1,575.6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일 반 운영비	시 설 관리비	기 타 (이윤 및 부가세)	비 고
1,575.6	805.7	233.3	461.6	75	

마. 참고사항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근로자문화센터는 시민 및 근로자들에게 문화·복지공간을 제공하여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건립되었으며

- 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도서관, 강의를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
- 직영할 경우 공무원 증원제한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, 단체에 위탁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
- 사후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